

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5215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민옥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 B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1. 1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2. 3. 29. 접수 제38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은 E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12. 7. 접수 제1876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다. 피고 D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12. 7. 접수 제1876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 나.항 및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12. 7. 접수 제1876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2003. 7. 29. 보증금액 33,000,000원, 보험가입기간 2003. 7. 29.부터 2006. 9.
26.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2. 6. 보증금액 20,460,000원, 보험가입기간
2004. 12. 6.부터 2015. 2. 18.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E은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F, G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을 대신하여 2005. 11. 3. 주식회사 F에
31,282,215원을, 2009. 4. 6. G공제회에 11,324,188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83138호로 ‘E은 원고에게 39,301,3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9. 5. 11.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39857호로 ‘E은 원고에게

11,324,1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9. 5. 2. 확정되었다.

라. E의 모 H가 2021. 10. 12.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D과 E, I은 2021. 12. 6.경 H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 B이 2021.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87654호), 피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87655호).

마. 그 후 피고 C가 2022. 3. 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2. 3. 29. 접수 제381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1/4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과 전득자인 피고 D,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이 H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I과 피고 B, D은 형제들이고, 피고 C는 I의 시어머니인 점, ② 피고 B와 C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한 채 합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들이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B에게, 피고 B은 E에게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며, 피고 D은 피고 B에게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부동산목록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대 185㎡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연화조 시멘트와가지봉
단층주택
59.50㎡

끝.

1) 원고는 피고 D이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나, 피고 D이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아닌 전득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행하여 피고 D에 대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